

의안번호	2203941
의 퇴 인	박충권의원
회 답 일	2024.11.11.
추계번호	24C3884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2조2 (지속치료필요대상자치료)	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속치료필요대상자에 대하여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지속치료필요대상자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연계하는 등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		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함(제3항)	재량규정
		-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속치료필요대상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속치료필요대상자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하여야 함(제4항) -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5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2조2 (지속치료필요대상자치료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속치료필요대상자¹⁾에 대하여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추가 인력에 필요한 비용이나 위탁 비용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퇴원 통보를 받은 정신질환자 중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정기적으로 치료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, 병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본인·보호자의 병원 내용을 독려하는 등의 지원을 이미 수행하고 있음
 - － 또한 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”을 통해 응급·행정입원, 외래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(2024년 예산 기준 23.4억원)
 - 다만, 현재 사례관리에 동의한 환자 이외에 개정안에 따른 지속치료필요대상자로 사업 대상이 확대될 경우 사업 규모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나, 조문의 “정기적 확인”, “치료 연계” 등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업 수행 내용은 향후 하위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 - － 예시로,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속치료필요대상자의 외래치료 여부를 유선, 자료제출 등의 다수의 방법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, 위원회 심사에 따른 지속치료필요대상자 수와 사례관리자 당 전담인력의 수 등에 따라서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1) 안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“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사람”을 말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